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87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광희・정성호

이병진 • 복기왕 • 염태영

김교흥 • 정준호 • 윤종군

권향엽 · 이정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·탈출구·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,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,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

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·탈출구·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,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,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6조).

법률 제 호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"10년 이하"를 "1년 이상 10년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혅 개 정 아 제46조(항공기 내 폭행죄 등) 제46조(항공기 내 폭행죄 등)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 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하는 폭행・협박・위계행위 또 하는 폭행・협박・위계행위 또 는 출입문・탈출구・기기의 조 는 출입문・탈출구・기기의 조 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징역에 처한다.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신 설>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.